

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및 발의일자 : 방진길의원 외 7인(2024. 06. 03)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06월 04일

다. 상정일자

- 제315회 포항시의회(제1차 정례회)
 -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(2024. 06. 26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방진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,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·불량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분류 기준을 현행화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혼동이 없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노후·불량건축물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·불량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 완화(안 제4조제2항)

3. 관련법령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·불량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분류 기준을 현행화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혼동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3조에서 노후·불량건축물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 규정,
 - 안 제4조에서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·불량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종합검토 결과,
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·불량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구역 지정이후에도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·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되어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